

1. 신원인수인(보호자·보증인)의 ‘권리’

① 입소자에 대한 정보 열람·설명 요구권

요양원은 보호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, 보호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입소자의 건강 상태, 돌봄 계획, 투약 기록
사고 발생 시 보고
요양원 운영 관련 주요 공지사항

② 요양서비스 이용 관련 의사결정 참여권

입소자의 치료·돌봄 방식, 외출·외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③ 시설 운영·서비스에 대한 질의 및 개선 요구권

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, 서비스 미흡 등에 대해 시정 요청 가능

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·지자체에 민원 제기 가능

④ 계약서·요금 관련 정보 확인 및 이의 제기권

입소비용 산정, 추가요금 부과 근거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, 부당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있음.

⑤ 면회·의사소통권

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자는 입소자 면회,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요구할 수 있음.

(감염병 상황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·보증인)의 ‘의무’

① 입소자의 신상 및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의무

기초 의학 정보, 복용 약물, 알레르기, 과거 병력 등 시설 운영과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요양원에 제공해야 함.

② 입소비용(이용료) 지급 보증 의무

본인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:

입소자가 비용을 내지 못할 때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.

***단순 보호자는 법적 보증 책임이 없지만, 시설 계약서에 따라 일부 책임이 포함될 수 있음.**

③ 요양원과의 의사소통·연락 유지 의무

비상연락, 의료 결정,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함.

④ 입소자 퇴소·치료 관련 의사결정 책임

시설에서 치료 변경, 병원 이송, 응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결정해야 할 역할을 가짐.

⑤ 입소자의 규율 준수 협조 의무

입소자가 시설 규칙을 준수하도록 협조하고

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따를 책임이 있음.

⑥ 필요 시 입소자를 인수(퇴소 조치)할 의무

요양시설에서 더 이상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

보호자는 입소자를 인수해 다른 시설 또는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해야 함.